

경상남도의회 제29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2011. 12. 13.)의 의결을 거친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남도교육감 고 영 진

2011년 12월 29일

경상남도 조례 제3666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본청과 제1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으로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교육감이 자문하기 위하여 본청에 다음과 같이 경상남도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관리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재정과장이 되며, 위원은 본청 각 담당관 및 과장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유재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하“외부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위촉하되 외부위원수는 전체위원수의 1/3이상으로 한다.

-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한 학교에서 재산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 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 나. 변호사 또는 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산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 다.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재산 관련 업무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
 - 라.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가.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나.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 다.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심의회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교육재정과 재산관리담당사무관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제4항제8호를 같은 항 제9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8.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

제5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교육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이하 “교육청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교육청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지원국장(국을 두지 않는 교육청의 위원장은 행정지원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각 과장(국을 두지 않는 교육청은 각 담당주무관)과 제5조제1항제2호각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위촉하되 외부위원수는 전체위원수의 1/3 이상으로 한다.

3. 교육청 심의회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교육재정과(행정지원과) 업무담당주무관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4. 그 밖에 교육청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항제3호의 규정과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심의회(교육청 심의회 포함)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5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본청과 제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으로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교육감이 자문하기 위하여 본청에 다음과 같이 <u>공유재산심의회</u>(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p> <p>1. 심의회는 <u>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제 2호의 인원으로</u> 구성한다.</p> <p>2. 위원장은 관리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재정과장이 되며, 위원은 본청 각 담당관 및 과장으로 한다.</p>	<p>제5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본청과 제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으로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교육감이 자문하기 위하여 본청에 다음과 같이 <u>경상남도교육청공유재산심의회</u>(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p> <p>1. 심의회는 <u>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u> 구성한다.</p> <p>2. 위원장은 관리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재정과장이 되며, 위원은 본청 각 담당관 및 과장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유재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위촉하되 외부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1/3 이상으로 한다.</p> <p>가. 「고등교육법」 제 2조에서 규정한 학교에서 재산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 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p> <p>나. 변호사 또는 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산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p>

현 행	개 정
	<p><u>한 사람</u></p> <p>다.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 단체의 공무원으로서 재산 관련 업무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p> <p>라.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p>
<u><신 설></u>	<p><u>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u></p>
	<p><u>가.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u></p>
	<p><u>나.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u></p>
	<p><u>다.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u></p>
	<p><u>4. 심의회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교육재정과 재산관리담당사무관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사무를 처리한다.</u></p>
	<p><u>② ~ ③(생략)</u></p>
	<p><u>④(생략)</u></p>
	<p><u>1. ~ 7. (생략)</u></p>
<u><신 설></u>	<p><u>8. (생략)</u></p>
	<p><u>9. (현행과 같음)</u></p>
	<p><u>⑤ (현행과 같음)</u></p>
<u>⑥ 교육청에는 그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교육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다음과</u>	<p><u>⑥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교육장이 자문하기 위하여</u></p>

현 행	개 정
같이 <u>공유재산심의회</u> 를 둔다.	다음과 같이 <u>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u> (이하 “ <u>교육청 심의회</u> ”라 한다)를 둔다.
1. <u>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제2호의 인원으로 구성한다.</u>	1. <u>교육청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2. <u>국을 두는 교육청의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은 각과장으로 하고, 국을 두지 않는 교육청의 위원장은 행정지원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교육청의 각 담당주무관 및 장학사로 한다.</u>	2. <u>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지원국장(국을 두지 않는 교육청의 위원장은 행정지원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각과장(국을 두지 않는 교육청은 각 담당주무관)과 제5조제1항제2호각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위촉하되 외부위원수는 전체위원수의 1/3이상으로 한다.</u>
3. <u>심의회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교육재정과(행정지원과) 업무담당주무관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사무를 처리한다.</u>	3. <u>교육청 심의회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교육재정과(행정지원과) 업무담당주무관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사무를 처리한다.</u>
4. <u>그 밖의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u>	4. <u>그 밖에 교육청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항제3호의 규정과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u>
⑦(생략) <u><신설></u>	⑦(현행과 같음) <u>⑧심의회(교육청 심의회 포함)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u>

현 행	개 정
	<p>에서 「경상남도 교육 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p>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재정 집행과정의 선심 지원 및 특혜 차단을 위한 부패영향평가(2011.6.1.)」 결과에 따른 권고 사항임.
-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있어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유재산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이상 13명이내 위원으로 구성(제5조제1항제1호 및 제6항제1호)
- 나. 공유재산심의회에 1/3 이상의 외부 전문가를 참여토록 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제5조제1항제2호 및 제6항제2호)
- 다.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중에서 이해관계자를 제외하도록 제척 규정을 신설(제5조제1항제3호)
- 라. 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의무화(제5조제4항)